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3.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67호로 2022년 3월 10일 유승용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청년기업의 요건을 영등포구 관내 거주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으로서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청년창업자를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각기 다른 서울시

정책별 청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 청년기업의 지원 사업을 규정함.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 경제 활동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할 수 있게 함.
- 안 제8조에서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함.

#### ○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 따라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5. 1.]

## 5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타. 중소기업의 육성

## 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0.10.5, 2021.7.20>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